

마리나산업 활성화를 위한 보험·공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홍성현* · † 홍희정

*해양수산부 행정사무관, † 경성대 국제처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Insurance Credit·System to Revitalize Marina Industry

Sung-Hyun Hong · † Hee-Jeong Hong*

** Deputy Director,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Dasom2-Rom Sejong-City, 30110, Korea*

† Assistant Professor, International Affairs, Kyungsoong University, Suyeong-Ro, Nam-Gu, Busan, 48434, Korea

핵심용어 : 마리나, 마리나정책, 해양관광정책

1. 서 론

2015년 마리나업(대여업·보관·계류업) 신설 이후 2019년 1월 기준 약 188개 업체가 영업 중이다. 이 중 2톤 이상의 마리나선박을 빌려주거나 운항을 대행하는 마리나 대여업은 해상에서 유람, 스포츠·여가용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여 승객이나 선원 등이 불의의 사고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자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마리나 전용 보험은 유사한 사업 양태를 보이는 수상레저보험과 비교할 때 보장범위가 좁다. 또한, 마리나 보험이 아닌 수상레저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많아 유사 시 면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보험·공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략) ……

책임보험은 마리나 대여업과 보관·계류업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마리나대여업자의 대인배상책임보험은 1인당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보상하며, 피보험자가 대여한 마리나 선박으로 인해 타인(대여업의 종사자 및 이용자를 포함)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그리고 마리나보관·계류업자 대인배상책임보험은 1인당 최대 1억 5천만원으로 대여업과 동일하며, - 보관·계류한 마리나 선박으로 인해 타인(보관·계류업의 종사자 및 이용자를 포함)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 (중략) ……

2.2 유사업종 보험과의 비교

마리나업과 유사한 형태의 사업으로 유도선사업, 수상레저사업, 낚시어선업이 있다. …… (중략) ……

2. 마리나 보험·공제 현황 및 문제점

2.1마리나 보험·공제 상품 구조

마리나 책임 보험은 보통약관과 일반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통약관은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일반사항을 반영한다. 그리고 특별약관은 마리나업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배상책임액과 손해방지비용, 방어비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의무 대인배상은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자동차손배상 보장법에 따른 사망·부상·후유장애를 적용한다.

* 정희원, jwhong@kmi.re.kr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중략)

구분	유도선사업	수상레저사업	마리나대여 (계류)업
보장 범위	이용객	이용객	종사자, 이용객
대인 배상	○ (산출기초 승선정원)	○ (산출기초 승선정원)	○ (산출기초 승선정원)
대물 배상	○ (이용객 소지품)	○ (이용객 소지품)	○ (이용객 소지품)
제 3 자	대 인	○	○
	대 물	×	×
치료비	○	○	×
구조비	○	○	×
종사자 상해	선원근재 의무가입	○	×
종사자 벌금	×	○	×

참 고 문 헌

- [1] 해양수산부(2020),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보고서
- [2] 해양수산부(2020), 마리나대여업 현황 통계
- [3] 홍장원 외(2013), 해양레저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4] 홍장원 외(2011), 마리나 서비스산업의 국부창출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3 기존 마리나 보험·공제의 문제점

현행 마리나 보험은 제3자 배상이 없어 타인에 의한 손실 발생 시 보장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그리고 마리나 대여업과 수상레저업의 유사한 외형으로 인해 일부 사업자의 경우 수상레저업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 수상레저 보험 약관에는 배상책임 대상을 수상레저기구(사업자용, 업무용)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마리나 대여업자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매우 크다. (중략)

3. 마리나 보험·공제 개선 방안

기존 마리나업 보험·공제가 가진 수상레저 보험 가입에 따른 면책 분쟁 소지, 좁은 보장 범위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마리나 공제 설립이다. 하지만 이 방안은 (중략)

4. 결 론

이상에서 현행 마리나 보험·공제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마리나업이 처음 생긴 이후 사업체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마리나정비업 신설도 예정되어 있는 등 점차 확장되고 있다.

하지만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보험·공제 제도의 미비는 마리나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